

法學教育在台灣—以學士後法律教育為重心之探討

高玉泉*

壹、概說

1990年代中期以前，在台灣要想成為一位律師，正常的路徑就是進入傳統的公私立大學法律系就讀，取得法學士學位後，通過律師國家考試，取得律師執照。¹⁾但隨著台灣政治經濟的發展，社會對專業法律人，尤其是律師的需求日益增加，法學教育乃逐漸由傳統的「一體法律人」²⁾轉變為多元發展的趨勢。至今，大專院校法律學系林立，課程及學制日新月異。而習法人數，包括來自不同社會階層者，大幅增加。法學教育呈現前所未有的蓬勃發展。對於台灣法治社會的充實，有著深遠的影響。本文以下將介紹台灣法學教育近十餘年來的發展。作者並將針對此種演變趨勢，嘗試作一評析。

貳、法學教育的演變

1990年以前，全台灣約僅有10所大學設有法律系（含研究所）。³⁾大部分的法律系並另設有研究所，供法律系畢業生攻讀碩士及博士。這10所法律系，有的是隸屬法學院（如國立台灣大學），有的則隸屬於商學院（如中原大學）。

* 臺灣 中興大學

- 1) 另外，有部分律師係由司法人員〈責任法官、檢察官、軍法官〉退休或學者依檢覈辦法取得資格。
- 2) 所謂「一體法律人」源自於德文，原則上係指只要順利完成法律教育流程的人即可從事各種法律職業。參見黃程貴，「一體法律人」教育之利與弊，月旦法學教室，第10期，2003年7月15日，頁136-137。
- 3) 即國立台灣大學、國立政治大學、國立中興大學、東吳大學、東海大學、輔仁大學、中原大學、文化大學、警察大學及國防大學等。

然而，隨著政府開放設立大學院政策以來，台灣的公私立大學數量迭增。⁴⁾而各校新設法律系更蔚為風潮。至2005年，台灣各大學之公私立法律學系及獨立研究所已有33所⁵⁾之多。所提供的學制，更是琳瑯滿目，包括博士、碩士、學士、專業班、學士後法律學士班、在職班、進修班、學分班、推廣教育班及函授班等。上述學制，可分為四大類，即學士法律教育、學士後法律教育、學分班法律教育及研究所碩博士法律教育。茲分別介紹之。

一、學士法律教育

所謂學士法律教育，主要係指高中學生通過大學考試，進入大學法律系就讀，畢業後取得法學士之謂。比較值得一提的是，近年部分大學放棄新設法律系，而改設財經法律系及政治法律系等等。這其中，以財經法律系的設立最為流行。考其原因，主要有二：1、台灣的經濟發展已達相當程度，相關的專業法律領域如國際貿易、環境保護、智慧財產、公平交易、財務金融等問題越來越多，也越來越迫切，培養此方面的法律人才，乃成趨勢；2、台灣各大學及學系所的設立皆受教育部之管理及監督。新設系所，尤須經教育部之嚴格審查。政策上，教育部傾向以有特色及符合社會需求者優先。財經法律系較諸一般法律系，在名稱及課程上更具吸引力且符合市場需求。以中興大學財經法律系為例，學生除應在4年內修習傳統法律科目外，尚須修習會計學、經濟學、財政學、仲裁法、國際經濟法、國際貿易法、智慧財產權法、公平交易法、銀行法及企業併購法等財經專業科目。⁶⁾這較諸一般法律系的課程設計，顯然更符合社會需求。

大學法律系及財經法律系修業年限大部分為4年，部分學校如東吳大學及中原大學，因加修英美法相關課程（如英美法導論、英美契約法、侵權行為法、證據法、英

4) 至2005年台灣的公私立大專院校已有約170所。

5) 台灣各公、私立大學設有法律系者如下：1.台灣大學法律系；2.政治大學法律系；3.台北大學法學系、司法學系、財經法學系；4.中正大學法律系、財經法律系；5.高雄大學法律系、政治法律系、財經法律系；6.成功大學法律系；7.國防大學法律系；8.中央警察大學法律系；9.中興大學財經法律系；10.東吳大學法律系；11.輔仁大學法律系、財經法律系、學士後法律系；12.東海大學法律系；13.文化大學法律系；14.銘傳大學法律系；15.中原大學財經法律系；16.世新大學法律系；17.玄奘大學法律系；18.靜宜大學法律系；19.真理大學財經法律系；20.橋光技術學院財經法律系；21.育達商業技術學院財經法律系；22.致理技術學院財經法律系；23.開南管理學院法律系；24.稻江科技暨管理學院財經法律系；25.台中健康暨管理學院財經法律系；26.興國管理學院財經法律系；27.崇右企業管理專科學校財經法律系。

6) 參見：<http://www.nchu.edu.tw/~law/> (visited 25 April, 2005.)

美刑法及刑事訴訟法、買賣法等），故延長為5年。換言之，學生就讀法律系之年齡普遍約為18至23歲。如果用功修習，加上些運氣，23歲即可能考取律師高考或司法官特考。

學費方面，由於受教育部之嚴格管理，故差異性不大。公立大學法律系學雜費約每年5萬元（USD \$1,500），私立大學則為10萬元（USD \$3,000）。清寒學生則享有許多種獎學金及低利貸款，以減輕負擔。

二、學士後法律教育

所謂學士後法律教育，係指部分學校另採美國law school的模式，提供所謂「法律碩士專業班」（又稱法律碩士乙組）或「學士後法律系」課程，專門招收具有非法律系畢業的學士以上學位之學生就讀。首創者為東吳大學，於1991年正式開班。其設立原因為「入學新生在心智方面比較成熟，文理基礎較高，更重要的是，經過四年的大學學習與兩年的社會生活磨鍊，然後才決定要選讀法律，這個選擇必是經過熟慮的，心智比較堅定，讀書也比較踏實。前此在大學裡所修習的理、工、醫、農、文、商等不同學門的基礎學識，在「法律專業碩士班」的教學裡，可以相互融合；加上三年基礎法學的訓練，畢業後無論是改頭換面，帶著各學門的廣博常識去從事法律實務，或是帶著充分的法學造詣回去原有的行業繼續努力，都能實現科際整合的理想，並將法律及各學科的專業知識做一緊密結合，發揮最大效能，以期對社會有更多之貢獻。」⁷⁾另外，輔仁大學於2003年8月成立的學士後法律學系，其目的則在於培養科際整合之專業法律人才，滿足在職專業人士進修法律之需求等理想。⁸⁾目前，全台灣共有17所大學設有此種課程。修業年限則為2至4年不等。1991年設立以來，東吳大學的法律碩士專業班，平均每年招收非主修法律之大學畢業生27人，其中不乏具醫師、會計師、工程師、藥師、科技及研究人員、記者、警官等等。⁹⁾

另外，部分大學設立之獨立研究所，如「科技法律研究所」乙組，情況亦類似。惟「學士後法律系」、「法律碩士專業班」或「科技法律研究所」乙組等最主要的差別在於前者畢業後取得法律學士學位（法學士；Bachelor of Law；LL.B.）；後者則為

7) <http://www.scu.edu.tw/lex/mllm1.htm> (visited 27 April, 2005.)

8) <http://night.ntcc.fju.edu.tw/night/class/LAW1/本系簡介.htm> (visited 27 April, 2005.)

9) 成永裕，大學法律專業教育之新嘗試—以東吳大學法學院碩乙組為例，台灣法學會學報第21輯，2000年11月30日，頁351。

法學碩士學位（法學碩士；Master of Laws；LL.M.）。這與美國law school畢業後取得之法律博士（Juris Doctor；J.D.），又不相同。有學者從比較法的觀點認為碩乙組的制度在國外非常罕見。亦即對初次學法律者，跳過學士學位之階段，就直接給予碩士學位。此種設計，同時可能會對傳統法律系學生造成不公平之現象，因其必須修習6至7年之法律，才能得到法學碩士學位，而碩乙組學生，卻可較快獲得碩士學位。¹⁰⁾

課程規劃方面，不論係一般的大學法律系、或仿美國law school所設之學士後法律系、或法律碩士專業班，都係以傳統的大陸法系的核心科目（又稱主要法律科目）為主，即憲法、行政法、民法（包括總則、債編、物權、親屬、繼承）、刑法（總則、分則）、民事訴訟法、刑事訴訟法、國際私法及商事法（包括公司法、票據法、海商法、及保險法）等，外加自行開設具有特色的科目。例如，在科技法律研究所招收非法律系畢業生的情形，尚須加修科技法律相關科目之課程，始得畢業。以中興大學科技法律研究所為例，研究生除須修滿至少16學分之主要法律科目外，尚須修習其他科技法律課程48學分（包括畢業論文6學分），始具畢業資格。¹¹⁾表列如下：

93學年度社管學院科技法律研究所碩士班課程科目規劃表

科 目 字 頭	必 修 或 選 修	科 目 名 稱	學 分 合 計	學分數		開 課 系 所	先 修 科 目	備註 (本欄請註明修訂原因)			
				第一 學 期							
				講 授 學 分	實 習 學 分						
6	必	科技管理專題研討	3	3		科法所	A				
6	必	科技政策與法律	3	3		科法所	A				
6	必	資訊法	3		3	科管所	A				
6	必	跨國界法律專題研討	3		3	科法所	A				
6	必	科技法律專題（一）	0	0	0	科法所	C				
6	選	英美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6	選	電子商務與法律	3	3		科管所	A				
6	選	網路內容管制機制專題研討	3	3		科管所	A				
6	選	資訊刑法專題研討	3	3		科管所	A				
6	選	科技產業發展與競爭法專題研討	3	3		科法所	A				

10) 謝銘洋，學士後法學教育之理念與規劃，載台灣法學會學報第21輯，2000年11月30日，頁390。

11) 參見：<http://www.nchu.edu.tw/~ilst/index1.html> (visited 25 April, 2004.)

科 目 字 頭	必 修 或 選 修	科 目 名 稱	學分數				開 課 系 所	先 修 科 目	開 課 屬 性	備註 (本 欄請 填 註 科 修 訂 原 因)				
			第一 學 期		第二 學 期									
			講 授 學 分	實 習 學 分	講 授 學 分	實 習 學 分								
6	選	產業發展與管理	3	3			科法所	A						
6	選	策略管理	3	3			科管所	A						
6	選	科技行銷	3	3			科管所	A						
6	選	智慧財產權法總論	3	3			科管所	A						
6	選	智慧財產權專題	3		3		科法所	A						
6	選	契約法專題	3		3		科法所	A						
6	選	科技行政法	3		3		科管所	A						
6	選	侵權行為法專題	3		3		科法所	A						
6	選	法學方法論	3		3		科法所	A						
7	必	智慧資源規劃	3	3			科法所	A						
7	必	科技法律專題（二）	0	0	0		科法所	C						
7	必	畢業論文	6	3	3		科法所	C						
7	選	電子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光電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生科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電子商務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傳播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永續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機電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化工產業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中國大陸法律專題	6	3	3		科法所	A						
7	選	WTO法律專題	6	3			科法所	A						
7	選	歐盟法律專題	6	3			科法所	A						
7	選	高科技犯罪專題	3	3			科法所	A						
7	選	企業倫理專題	3	3			科法所	A						
7	選	國際談判	3	3			科法所	A						
7	選	科技倫理專題	3		3		科法所	A						
7	選	科技與隱私權保護	3		3		科法所	A						

很明顯的，學士後法律系、法律碩士專業班及科技法律研究所乙組，其目的在於落

實科技整合與多元發展，使心智較為成熟、具工作經驗的學生能將法律結合工商、科技等原有專業知識從而貢獻社會。¹²⁾

至於未來出路，畢業生其實與傳統大學法律系畢業生相去不遠，如通過國家考試，可從事律師、法官、檢察官、公證人、檢察事務官、法官助理、書記官、或至民間企業擔任法務專員等。由於學士後法律教育課程之畢業生多已具備另一專長，故一般認為在法律市場上，較一般法律系畢業生更有競爭力。這或許足以解釋為何自1991年後，台灣各主要大學普設學士後法律課程。

筆者認為，以美國law school為模仿對象之碩乙組、或法律碩士專業班，其特色有下：（1）學費較傳統法律系高。以東吳大學為例，其學費依學分計算，學分費最高至6,500元（USD \$195），依各個不同組別，畢業至少須繳22萬至28萬元（USD\$6,600~8,400）不等之學費。對於學校的財源，頗有助益。（2）授課時間多安排在晚間或週末全天。由於授課教師原則上為原大學法律系專任教師，而專任教師於日間即排有授課時間，故碩乙組上課時間多安排在晚間或週末全天。另一方面，此種安排，亦可吸引白天有工作之社會菁英就讀。（3）授課方式與傳統大學法律系並無不同。

學士後法律系、碩乙組及法律碩士專業班至今已開設10餘年，造就不少專業法律人才。

茲將傳統法律系學士法律教育與學士後法律教育區分表列如下：

學位名稱	學費		師資	資格	年限
學士法律教育	LL.B.	國立大學約 50,000元（USD \$1,500） ；私立大學約 100,000元（USD \$3,000）	校聘專任師資為主	高中畢業經甄試 或大學聯考	4至 5年
學士後法律教育	LL.B. 或 LL.M.	不等，多以學分費計算，每學分有高至6,500元（USD \$195）者。完成學業約需22~28萬元（USD\$6,600~8,400）	校聘專任師資為主	具非法律系學士學位，通過各校資格考者。部分學校要求具相當工作經驗	2至 3年

12) 董保城，學士後法學教育之現況與檢討，載台灣法學會學報第21輯，2000年11月30日，頁380。

三、學分班

除學士法律教育及學士後法律教育外，部分大專院校尚設有所謂學分班、推廣教育班、及函授班等。例如，中興大學財經法律學系每學期皆開設學分班課程，授課科目為行政法、民法、商事法、刑法、刑事訴訟法、民事訴訟法及國際私法。除國際私法為2學分外，其餘皆為3學分。學費每學分3,200元（USD\$100）。授課時間每週一次，晚間6:50至9:30，共18週。學員通過學期考試，由學校發給學分證明，但不授與學位。師資方面，主要由財經法律系專任教師支援。函授班則無授課教師。學分班、推廣教育班及函授班設立的最主要目的在於推廣法律常識。故授課對象僅須高中職畢業即可。由於考試院近年放寬報考律師及公證人資格，規定只要修滿二十學分之主要法律科目課程，即具報考資格。¹³⁾此項新規定，使各校學分班及推廣教育班大行其道。

四、研究所

傳統的法律研究所包括碩士班及博士班，主要係提供具有法學士資格者繼續深造之學制。除前述碩乙組外，目前碩士班研究所極為普遍，幾乎傳統的公私立大學皆有設立。博士班則較少，僅有台灣大學、政治大學、台北大學、中正大學、輔仁大學及東吳大學等少數歷史悠久的大學有設立。

課程方面，各校碩博士班皆強調自己的特色。如台灣大學碩士課程，分為基礎法學

13) 考試院所定報考資格如下：中華民國國民，具有下列資格之一者，得應本考試：

- 一、公立或立案之私立專科以上學校或經教育部承認之國外專科以上學校法律、法學、司法、財經法律、政治法律科、系、組、所畢業，領有畢業證書者。
- 二、公立或立案之私立專科以上學校或經教育部承認之國外專科以上學校相當科、系、組、所畢業，領有畢業證書，並曾修習民法、商事法、公司法、海商法、票據法、保險法、民事訴訟法、非訟事件法、仲裁法、公證法、強制執行法、破產法、國際私法、刑法、少年事件處理法、刑事訴訟法、證據法、行政法、證券交易法、土地法、租稅法、公平交易法、智慧財產權法、著作權法、專利法、商標法、消費者保護法、社會福利法、勞工法或勞動法、環境法、國際公法、國際貿易法、英美契約法、英美侵權行為法、法理學、法學方法論等學科至少七科，每學科至多採計三學分，合計二十學分以上，其中須包括民法、刑法、民事訴訟法或刑事訴訟法，有證明文件者。
- 三、普通考試或相當於普通考試之特種考試法院書記官考試及格後任法院書記官擔任審判紀錄、財務、民事執行職務或檢察署書記官擔任偵查紀錄或行政執行署、處擔任行政執行職務四年以上，有證明文件者。
- 四、高等檢定考試法務相當類科及格者。

組、公法組、民法組、刑法組、經濟法組、財經法組及國際法組等。博士班亦分為基礎法組、公法組、刑法組及民商法組等。世新大學的碩士班則分傳播科技法組、智慧財產權法學組、財經企業法律組等專業課程，供學生選擇。

學費方面，前兩年與學士班相去不遠，之後則僅繳交雜費。修業年限則較彈性。一般而言，碩士班2至4年、博士班4至8年。由於修習博士班的學生大都已有工作，故極少在4年內畢業。

碩、博士班學生入學後通常在前2年須修習相關課程，取得畢業所要求之基本學分數後，經指導教授同意，始得開始撰寫論文。例如，世新大學碩士班規定學生須修滿30學分之課程，經法學院同意後，開始撰寫畢業論文。畢業論文尚須經嚴格的口試。

參、評析

台灣的法學教育，自1990年代以後，在訓練法律人才上，已從過去「一體法律人」單軌制，改為兼採美國law school的學士後法律教育的雙軌制。這種改變，不但使攻讀法律的人口增加，對於培養科技整合及專業法律人才，更有相當助益。換言之，不論在「量」及「質」上，台灣的法學教育皆較過去有重大改變。尤其在律師的素質上，更明顯有所提昇。儘管如此，論者認為，台灣的法學教育仍有諸多值得改進的空間。

首先，學者認為，儘管兼採美國的law school制度，大專院校開始開設學士後法律課程，然而在教學上，卻並未採用美式的蘇格拉底方法(Socratic Method)，即以法院的案例為基礎，重視問題的提出及案件的內容及其影響的討論。換言之，授課的目的在於強化學生的分析、推理與表達的能力。¹⁴⁾反觀台灣，其學士後法律教育，上課方式仍與傳統大學法律系無異，僅是入學資格有所不同而已。就此點言，所謂採用美式law school學制，有待商榷。

至於各校開設此等課程，大多係在未增加專任教師員額的情況下，由原專任教師授課。換言之，此無疑增加專任教師的授課負擔。對於資淺的專任教師¹⁵⁾(如副教授及

14) 馮震宇，從美國法學教育與考試制度看我國法學教育與考試之改革，載月旦法學雜誌，第96期，2003年5月，頁251。

15) 依大學法第17條的規定，大學教師分教授、副教授、助理教授及講師四級。惟近年，至少在國立大學，已停止聘用不具博士學位的講師。

助理教授），將因此減少其研究的時間。在大學評鑑日益講求教學、研究及服務並重的今天，資淺的教師已面臨相當的心理壓力。甚是不公。

另外，從律師的錄取率觀察，儘管台灣的法學教育制度已有所改變，但由國家主辦的律師考試錄取率仍然偏低，與美國各州平均錄取率高達百分之七十（70%）以上，不可同日而語。¹⁶⁾例如，根據政府官方數字，1985年至2003年律師考試及格人數與及格率如下：¹⁷⁾

年度	及格人數	及格率 (%)
1985	24	2
1986	29	2
1987	100	5
1988	16	1
1989	288	14
1990	290	10
1991	363	11
1992	349	11
1993	563	15
1994	215	6
1995	287	8
1996	293	8
1997	265	7
1998	231	6
1999	564	14
2000	264	6
2001	326	7
2002	359	8
2003	388	8

上列數字似乎告訴我們，儘管在1991年後法律系（研究所）畢業生有所增加，但錄取率仍偏低。這也就無怪乎不斷有考生質疑國家的律師高考係在保護既得利益（現執業律師），而非真正的資格考了！另外，考試內容偏重背誦條文與記憶，這與美國律師考試制度的目的在測驗考生擔任律師的基本能力，亦不相同。

然而，這尚非最嚴厲的批判。國立政治大學法律系教授董保城甚至指出，台灣的學

16) 馮震宇，同註14，頁254。

17) 參見：<http://www.exam.gov.tw/stadoc/127.xls> (visited 25 April, 2004.)

士後法律教育不但在課程內容、師資、外國語文等方面必須要強化，甚至在招收學生上亦應檢討。如上所述，在我國申請就讀學士後法律課程者，大都已有工作，部分甚至具有醫師、會計師、工程師、大企業經理人、政府高階公務員等資格。這些社會賢達一旦錄取後，由於本身專業無法中斷執業，以致難以全心全力投入法律的研習，而授課教師也難免體諒此等人員在社會上的角色，在成績評量上給予特別眷顧，造成同學學習處置不公，形成無法落實法律專業之要求。長此以往，整個學士後法律課程恐變質為各校法學院建立人脈、豐沛人際關係與爭取社會資源之工具，而有悖於當初設立之宗旨。¹⁸⁾

基於上述理由，近年已有學者提出多種改革方案，如招生上應改為有潛力者優先，學士後法學教育應改採兩階段（即前階段為學士課程教育，後一階段為碩士課程教育）等。¹⁹⁾這些改革構想，目前正經各校及教育部審慎評估當中。

肆、結語

台灣的法學教育，自1990年代以後，已超脫以往「一體法律人」的保守教育政策，而呈現活潑、多元的發展態勢。採開放及雙軌制法學教育政策的最明顯效果是，就讀法律系所的人口大幅增加。現在，在台灣，幾乎只要有心習法，皆可找到一所大學就讀並取得學士或碩士學位。對於法律市場的效應是，競爭轉趨激烈，意謂法律服務的更普及及水準品質的提昇。長遠而言，對台灣法治社會的充實，有所裨益。不可諱言，此種政策上的改變，乃受美國law school體制之啟發而來。由於施行未久，許多細節部分仍有待改進。但這並不足影響整個法學教育走向。未來應重視者，似乎是如何進一步提昇教學內涵及品質，以因應全球化、國際化的需求。

18) 董保城，同註12，頁385。

19) 謝銘洋，同註10，頁390-392。

타이완에서의 법학교육

- 학사 후 법률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 -

高 玉 泉*
원 문 철(역)**

I. 개설

1990년대 중기 이전에 타이완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전통적인 공립·사립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해야 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에 변호사국가고시를 거쳐야만 비로소 변호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¹⁾ 그러나 타이완 정치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인, 특히 변호사에 대한 사회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법학교육은 전통적인 “일체의 법률인”²⁾ 으로부터 다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현재 까지 각 대학교의 법학과가 즐비하고, 과정 및 학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온 인사들을 포함하여 법률을 공부하는 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법학교육은 종전에 없었던 왕성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타이완의 법제 사회를 보강하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약 10년 동안 타이완의 법학교육 발전을 소개하고, 필자는 이러한 변천과정에 대해 평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국립중동대학법률학과교수 겸 학과주임.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수료.

- 1) 그리고 일부 변호사는 사법계(법관, 검찰관, 군 법관)에서 퇴직 또는 학자들이 檢覈방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
- 2) “일체 법률인”이란 단어는 독일에서 유래 된 것이고, 법률과정을 완수한 자가 여러 가지 법률에 관련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黃程貫, “一體法律人”교육의 이해, 月旦法學教室, 제10호, 2003년 7월 15일, 136-137면.

II. 법학교육의 변천

1990년 이래 타이완 전역에 단 10개 대학에서 법학과(연구소를 포함)를 설립하고 있다.³⁾ 대부분의 법학과는 법학과에서 졸업한 석·박사를 위해 별도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 10개 법학과는 법학원에 소속된 것이 있고(예컨대 國立臺灣大學), 상학원에 소속된 것도 있다(예컨대 中原大學).

그런데 정부의 대학 설립을 개방하는 정책에 의해 타이완의 국립·사립대학 수량이 급증하였다.⁴⁾ 또한 각 대학에서 법학과를 설립하는 경향으로 되었다. 2005년 까지 타이완 각 대학의 국립·사립 법학과 및 독립된 연구소가 이미 33개에 달한다.⁵⁾ 박사, 석사, 학사, 전문반, 학사 후 법률학사반, 재직반, 진수반, 학점반, 교육보급반 및 통신교육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제가 있다. 상술한 학제는 주로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학사법률교육, 학사 후 법률교육, 학점반 법률교육 및 석박사연구소법률교육이다. 각각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사법률교육

학사법률교육이란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거쳐 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법학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언급할 만한 것은 근년에 일부 대학은 법학과의 설립을 포기하고 재경법학과나 정치법학과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중에서도 재경법학과의 설립을 선호하고 있다. 그 원인을 주로 두 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① 타이완의 경제발전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분야, 예컨대 국제무역, 환경보호, 지적재산, 공정거래, 재무

3) 즉 國立臺灣大學, 國立政治大學, 國立中興大學, 東吳大學, 東海大學, 輔仁大學, 中原大學, 文化大學, 警察大學 및 國防大學 등.

4) 2005년까지 타이완의 국립·사립대학 수는 170개.

5) 타이완 각 국립·사립대학에서 법학과를 설립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1) 臺灣大學법학과, 2) 政治大學법학과, 3) 臺北大學법학과, 4) 中正大學법학과, 5) 高雄大學법학과, 政治法학과, 財經法학과, 6) 成功大學법학과, 7) 國防大學법학과, 8) 中央警察大學법학과, 9) 中興大學財經法학과, 10) 東吳大學법학과, 11) 輔仁大學법학과, 財經法학과, 학사후법학과, 12) 東海大學법학과, 13) 文化大學법학과, 14) 銘傳大學법학과, 15) 中原大學財經法학과, 16) 世新大學법학과, 17) 玄奘大學법학과, 18) 靜宜大學법학과, 19) 真理大學財經法학과, 20) 橋光技術學院財經法학원, 21) 育達商業技術學院財經法학과, 22) 致理技術學院財經法학과, 23) 開南管理學院법학과, 24) 稻江科技暨管理學院財經法학과, 25) 臺中健康暨管理學院財經法학과, 26) 興國管理學院財經法학과, 27) 崇右企業管理專科學校財經法학과.

금융 등 문제들이 날로 많아지고 급박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추세이다. ② 타이완 각 대학 및 학과 및 연구소의 설립은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특히 신설한 학과나 연구소는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는 필수적이다. 정책상 교육부는 독특하고도 사회수요가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재경법학과는 기타 일반 법학과보다 명칭이나 과정상에서 더욱 매력이 있고 시장에 부합한다. 中興대학 재경법학과를 예로 들면, 학생들은 4년 동안에 전통적인 법률 과목뿐만 아니라 회계학, 경제학, 재정학, 중재법, 국제경제법, 국제무역법, 지적 재산권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및 기업합병법 등 재경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⁶⁾ 이는 일반 법학과의 과정설계보다 사회수요에 더 맞는 것은 분명하다.

대학 법학과 및 재경법학과 대부분은 4년제이고, 일부 학교 예컨대, 東吳大學 및 中原大學 등은 영미법의 관련된 과정(예를 들면, 영미법개론, 영미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영미형법 및 형사소송법, 매매법 등)을 추가였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환언컨대 학생들이 법학과에서 공부하는 연령은 보통 18-23세이다. 만약 공부에 열중하고 운도 따르게 되면 23세 때에 변호사시험이나 사법관 특별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등록금 측면에서는 교육부의 엄격한 관리로 별 차이는 없다. 국립대학 법학과의 경우 연간 약 5만원(USD \$1,500), 사립대학은 약 10만원(USD \$3,000) 정도 된다. 가난한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및 저금리 대출을 마련하여 그들의 부담을 감소한다.

2. 학사 후 법률교육

학사 후 법률교육이란 일부 학교에서 미국의 law school 모델을 채택하여 “법률 석사전문반”(법률석사용조 라고도 함) 또는 “학사 후 법학과” 과정을 제공하고, 법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졸업한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창시자는 동오대학이고 1991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원래 그의 설립은 “신입생들은 지혜가 성숙하고 문리적 기초가 견실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과 2년 동안 사회생활의 단련을 거친 후에 법학공부를

6) <http://www.nchu.edu.tw/~law/> (visited 25 April, 2005) 참조.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충분한 사고를 거쳤고, 마음도 확고하며 공부도 착실하게 할 수 있다. 그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理, 工, 醫, 農, 文, 商 등 여러 분야의 기초학문을 이수하였고, ‘법률전문석사반’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융합할 수 있다. 게다가 3년 동안 기초법학의 훈련을 받아 졸업한 후에 간판을 바꾸어 각 분야의 해박한 학문으로 법률실무에 종사하거나 충분한 법학지식을 가지고 원래의 업종에 돌아가서 계속 노력한다면 과학과 실제의 정합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법률 및 각 학과의 전문지식을 긴밀한 결합으로 더 큰 역할 발휘하여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⁷⁾ 그리고 輔仁大學은 2003년 8월에 학사 후 법학과를 설립하여 과학과 실제의 정합하는 전문법률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 전문 인사들이 법률공부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⁸⁾ 현재 타이완 전역의 17개 대학에서 이러한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2~4년제로 학교마다 다르다. 1991년 설립 이래에 동오대학의 법률석사전문반에서 연간 평균 27명의 비전문법률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사, 회계사, 기사, 약사, 과학기술 및 연구원, 기자, 경찰 등이 적지 않다.⁹⁾

그밖에 일부 대학에서 설립된 독립 연구소 예컨대 “과학기술법률연구소”을 조의 상황도 유사하다. 단 “학사 후 법학과”, “법률석사전문반” 또는 “과학기술법률연구소”을 조 등의 주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졸업한 후에 법률학사학위(Bachelor of Law; LL.B.)를 받고, 후자는 법학석사학위(법학석사;Master of Law;LL.M.)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law school에서 졸업한 후에 받는 법률박사(Juris Doctor; J.D.)와 같지 않다. 어떤 학자는 비교법의 시작으로 석사를 조는 국외에서 보기 아주 드문 제도라고 보고 있다. 즉 법률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받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구도는 전통적인 법학과 학생들에 대해 불공평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6~7년의 법률 공부를 해야만 법학석사학위를 받는 반면에 석사를 조의 학생들 단기 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있기 때문이다.¹⁰⁾

과정의 기획 측면에서 일반 대학 법학과, 또는 미국 law school를 모방하여 설립한 학사 후 법학과, 또는 법률석사전문반을 물론하고 모두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7) <http://www.scu.edu.tw/lex/mllm1.htm>(visited 27 April, 2005).

8) <http://night.ntcc.fju.edu.tw/night/class/LAW1/本系簡介.htm>(visited 27 April, 2005)

9) 成永裕, “大學法律專業教育之新嘗試-以東吳大學法學院碩乙組為例”, 타이완법학회학보 제21집, 2000년 11월 30일 351면.

10) 謝銘洋, 學士後法學教育之理念與規劃, 타이완법학회학보 제21집, 2000년 1월 30일, 390면.

핵심과목(또는 주요법률과목) 즉 헌법, 행정법, 민법(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등을 포함), 형법(총론, 각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사법 및 상사법(회사법, 어음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포함), 그리고 스스로 개설한 독특한 과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법률연구소가 모집한 비법학과 졸업생의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 법률과 관련된 과목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만 비로소 졸업할 수 있다. 중홍대학 과학기술법률연구소의 예를 들면, 연구생은 16학점인 주요 법률과목 외에 반드시 기타 과학기술법률과정의 48학점(졸업논문 6학점을 포함)을 필수 해야만 비로소 졸업할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¹¹⁾ 다음과 같이 도표를 만들 수 있다.

93학년도 사회관리학원 과학기술법률연구소 석사반 과정과목 기획표

과 목 머 리 수 자	필 수 또 는 선택	교 과 목 이 름	학 점 합 계	학 점				과 목 개 설 학 과 研 究 소	이 수 과 목	개 설 과 목 속 성	비 고 (이란 에다 과목수 정원인 을기재)
				제1학기		제2학기					
수 강 학 점	견 습 학 점	수 강 학 점	견 습 학 점								
6	필	과학기술관리전문테마연구토론	3	3				과법소	A		
6	필	과학기술정책과 법률	3	3				과법소	A		
6	필	정보법	3			3		과법소	A		
6	필	불법행위법률전문테마연구토론	3			3		과법소	A		
6	필	과학기술법률전문테마(1)	0	0		0		과법소	C		
6	선	영미법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6	선	전자상거래와 법률	3	3				과법소	A		
6	선	네트워크관리메카니즘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정보형법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과학기술산업발전과 경쟁법 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산업발전과 관리	3	3				과법소	A		
6	선	책략관리	3	3				과법소	A		
6	선	과학기술보급	3	3				과법소	A		
6	선	지적재산권법총론	3	3				과법소	A		
6	선	지적재산권 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계약법 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과학기술행정법	3			3		과법소	A		
6	선	불법행위법전문테마	3			3		과법소	A		
6	선	법학방법론	3			3		과법소	A		

11) <http://www.nchu.edu.tw/~ilst/index1.html>(visited 25 April, 2004)

과 목 머 리 수 자	필 수 또 는 선택	교과목이름	학 점 합 계	학점				과 목 개 설 학 과 연 구 소	이 수 과 목	개 설 과 목 속 성	비고 (이란 에다 과목수 정원인 을기재)				
				제1학기		제2학기									
				수 강 학 점	전 습 학 점	수 강 학 점	전 습 학 점								
7	필	지적자원기획	3	3				과법소	A						
7	필	과학기술법률전문테마(2)	0	0		0		과법소	C						
7	필	졸업논문	6	3		3		과법소	C						
7	선	전자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광전자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생명과학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전자상거래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산업보급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영구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기계전력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화공산업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중국대륙법률전문테마	6	3		3		과법소	A						
7	선	WTO법률전문테마	6	3				과법소	A						
7	선	유럽연맹법률전문테마	6	3				과법소	A						
7	선	첨단기술범죄전문테마	3	3				과법소	A						
7	선	기업논리전문테마	3	3				과법소	A						
7	선	국제협상	3	3				과법소	A						
7	선	과학기술논리전문테마	3			3		과법소	A						
7	선	과학기술과 프라이버시권 보호	3			3		과법소	A						

학사 후 법학과, 법률석사전문반 및 과학기술법률연구소을조는 과학기술의 정합과 다원화로 발전을 확실하게 하고, 지혜가 성숙되고 실무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을 공상업 및 과학기술 등 고유의 전문지식과 결합하게 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¹²⁾

졸업생들의 발전할 여지는 사실 전통적인 대학 법학과의 졸업생과 유사하다. 예컨대, 국가고시를 거쳐 변호사, 법관, 검찰관, 공증인, 검찰사무관, 판사보조, 서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법무전문담당도 될 수 있다. 학사 후 법률교육과정의 졸업생들 다수는 이미 전문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률시장에서 일반 법학과의 졸업생보다 경쟁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1991년 이후에 타이완의 각 주요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학사 후 법률과정 개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law school을 본떠서 만든 석사을조, 또는 법률석사전문반의 특징은 다음

12) 董保城, 學士後法學教育之現況與檢討, 타이완법학회학보 제21집, 2000년 11월 30일, 380면.

과 같다. ① 등록금이 전통 법학과보다 비싸다. 東吳대학을 예로 들자면, 그의 등록금을 학점으로 따지면 학점당 최고 6,500원(USD \$195)에 달하고, 조별로 보면 졸업하려면 적어도 22-28만원(USD \$6,600-8,400)을 내야 한다. 학교의 재원조달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수업시간은 대체로 야간이나 주말 하루 종일에 배치되고 있다. 수업강사들은 원칙적으로 원래 대학 법학과의 전임교사를 수업하도록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전임교사는 주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석사학위의 수업시간을 야간이나 주말 하루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는 낮에 직장 있는 사회 영재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③ 수업방식은 전통 대학법학과의 수업과 다름이 없다.

학사 후 법학과, 석사학위 및 법률석사전문반은 개설한지 이미 10여년이 되었고, 많은 전문적인 법률인재를 배출하였다.

전통법학과 학사법률교육과 학사 후 법률교육을 구분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학위명칭	등록금	교사	자격	기간
학사법률교육	LL.B.	국립대학 약 50,000(USD\$1,500) 사립대학 약 100,000(USD\$3,000)	학교 전임 교사를 위주	고등학교 졸업후 시험 또는 통일 시험을 거친다.	4-5년
학사후 법률교육	LL.B. 또는 LL.M.	같지 않음, 다수는 학점에 의해 계산, 학점당 최고는 6,500원(USD\$195). 졸업하려면 약 22-28만원(USD\$6,600-8,400).	학교 전임교 사를 위주	비법학과 학사학위를 소지자 각 학교의 자격 시험을 거침. 일부학교에서는 실무경험도 요구된다.	2-3년

3. 학점반

학사법률교육 및 학사 후 법률교육 이외에 일부 대학교에서는 학점반, 교육보급반 및 통신교육반 등을 설립하고 있다. 예컨대, 中興大學 재경법학과는 학기마다 학점반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수업과목은 행정법, 민법, 상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국제사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2학점이고, 그 외에 모두 3학점이다. 등록금은 학점당 3,200원(USD\$100)이다. 수업은 매주 한 번씩 저녁 6:50분부터 9:30분까지, 모두 18주이다. 수강생들은 학기 고시를 거쳐 학교로부터 학점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교사는 주로 재경법학과의 전임교사들

이 지원한다. 통신교육은 수업교사가 없다. 학점반, 교육보급반 및 통신교육반 설립의 주요 목적은 법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업대상은 단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족 한다. 고시원은 근년에 변호사 및 공증인 시험자격을 확장하여 20학점의 주요 법률과목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시험자격을 갖추다고 규정하였다.¹³⁾ 이 새로운 규정으로 각 학교마다 학점반과 교육보급반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4. 연구소

전통적 법률연구소는 석사반 및 박사반을 포함하여 주로 법학자 자격을 갖춘자가 계속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하는 학제이다. 전술한 석사반 이외에 현재 석사반연구소가 극히 보편화되어 전통적인 국립·사립대학에서 모두 설립된 상태이다. 박사반은 단지 타이완대학, 정치대학, 타이베이대학, 중정대학, 보인대학 및 동오대학 등 극히 적고 역사가 유구한 대학만이 설립되어 있어 아직은 비교적 적은 상태다.

과정 측면에서 각 학교 석박사반은 각기 자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타이완대학 석사과정은 기초법학조, 공법조, 민법조, 형법조, 경제법조, 재경법조 및 국제법조 등으로 나누고 있다. 박사반도 기초법조, 공법조, 형법조 및 민상법조 등으로 나누고 있다. 世新大學은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사반을 과학기술법조, 지적재산권법학조, 재경기업법률조 등으로 나누고 있다.

13) 고시원이 규정한 시험자격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국민이 아래 자격 중의 하나를 갖추면 시험하도록 해야 한다. ① 공립 또는 입안한 사립 전문대학 또는 교육부의 인증 받은 국외 전문대학 이상의 법률, 법학, 사법, 재경법률, 정치법률 학과, 系, 組, 所에서 졸업하여 졸업증을 받은 자. ② 공립 또는 입안한 사립 전문대학 또는 교육부의 인증 받은 국외 전문대학 이상의 법률, 법학, 사법, 재경법률, 정치법률 학과, 系, 組, 所에서 졸업하여 졸업증, 그리고 민법,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어음법, 민사소송법, 비소송사건법, 중재법, 공증법, 강제집행법, 파산법, 국제사법, 형법, 청소년사건처리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행정법, 증권거래법, 토지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소비자보호법, 사회복지법, 근로자법 또는 노동법, 환경법, 국제공법, 국제무역법, 영미계약법, 영미월권행위법, 법리학, 법학방법론 등 교과목 중에서 적어도 7개 과목이사, 매 교과목의 학점을 많아도 3학점을 합산하여 모두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하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 ③ 보통고시 또는 보통고시에 해당하는 특별고시, 법원 서기관시험에 합격하고 심판기록, 재무, 민사집행직무 또는 검찰서 서기관으로 수사기록 혹은 행정집행署, 處에 서 행정 직무를 4년 이상 담당하고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 ④ 고등검정고시에서 상당한 법무과목 합격한자.

등록금은 이전에는 학사반과 유사하고, 그 후에 단지 잡비만 내고 있다. 수업 연한도 탄력이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사반은 2-4년 밸사반은 4-8년까지이다. 박사반의 학생 다수가 이미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4년 내에 졸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석·박사반의 학생들이 입학 후 2년 내에 관련된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에 필수한 기본 학점을 받은 후에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世新大學 석사반은 학생들이 30학점의 교과목을 이수한 뒤에 법학원의 동의를 얻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졸업논문도 엄격한 구두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III. 분석

1990년 이후에 타이완의 법학교육은 법률인재의 훈련에 있어서 과거의 “일체 법률인”인 단일제로부터 미국 law school을 채택한 학사 후 법률교육의 복선형 교육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정합 및 전문 법률인재를 육성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환언컨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타이완의 법학교육은 과거보다 중대한 발전이 있다. 특히 변호사의 자질 측면에서의 향상은 더욱 뚜렷하다. 하지만 필자는 타이완의 법학교육은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비록 미국식의 law school제도를 채택하여 각 대학에서 학사 후 법률과정을 설립하기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교수과정에서 미국식의 대화법(Socratic Method), 즉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제기 및 판례의 내용 그리고 그의 영향을 치중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환언컨대, 수업 목적은 학생들의 분석, 추리와 표현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있다.¹⁴⁾ 반대로 타이완을 보면 그의 학사 후 법률교육의 수업방식은 여전히 전통 대학 법학과와 같고, 단지 입학자격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이점을 놓고 볼 때에 미국식 law school학제의 채택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다.

14) 馮震宇, 從美國法學教育與考試制度看我國法學教育與考試之改革, 月旦法學雜誌, 제96호, 2003년 5월, 251면.

각 학교에서 이러한 과정의 개설은 전임강사를 충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임강사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전임강사들의 수업부담을 증가는 틀림없다. 경력이 짧은 전임강사¹⁵⁾(부교수나 조교수)들은 이로서 그들의 연구하는 시간을 감축하게 된다. 대학평가에서 날로 수업, 연구 및 서비스를 치중하는 오늘 경력이 짧은 교사는 큰 심리적 압력을 직면하게 된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연도	합격수	합격률(%)
1985	24	2
1986	29	2
1987	100	5
1988	16	1
1989	288	14
1990	290	10
1991	363	11
1992	349	11
1993	563	15
1994	215	6
1995	287	8
1996	293	8
1997	265	7
1998	231	6
1999	564	14
2000	264	6
2001	326	7
2002	359	8
2003	388	8

그밖에 변호사의 합격률로 보면, 비록 타이완의 법학교육제도가 이미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는 변호사고시의 합격률은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고, 미국 각주의 평균 70%이상인 합격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¹⁶⁾ 예컨대, 정부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변호사고시 합격수와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¹⁷⁾

15) 대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사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4급으로 나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에 적어도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강사의 임용을 정지된 상태이다.

16) 馮震宇, 전개서, 254면.

17) <http://www.exam.gov.tw/stadoc/127.xls> (visited 25 April, 2004)

위에서 열거한 수자들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1991년 이후 법학과(연구소)의 졸업생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그러나 합격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바로 수험생들이 국가 변호사고시는 기득이익(현직 변호사)을 보호하는 것이지 진정한 자격시험에 아니라고 끊임없이 질의해온 원인이다. 그리고 고시내용은 조문의 암송과 기억에 편중하고, 이는 수험생이 변호사를 담당하는 기본 능력에 목적을 둔 미국 변호사고시제도와도 다르다.

하지만 이는 호한 비판이 아니다. 국립정치대학 법학과교수 董保城은 타이완의 학사 후 법률교육은 과정의 내용, 교사, 외국어 등 측면에서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모집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학사 후 법률과정을 신청하는 자의 다수가 직장인이고 일부는 약사, 회계사, 기사, 대기업에이전트, 정부 고위급 공무원 등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일단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기의 전문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고, 또한 수강하는 강사도 그들 사회에서의 지위를 이해해 줌으로 성적평가에서 특별히 돌봐주게 되어, 동학들 간에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되고 법률분야의 요구를 정착시킬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법학 후 법률 과정은 아마 각 학교 법학원이 인맥을 맺고 인간관계와 사회자원을 획득하는 도구로 전락될 것이고, 종전의 설립취지와 위배될 것이다.¹⁸⁾

상술한 이유를 바탕으로 근년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개혁방안, 예컨대 학생모집에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우선시하고, 학사 후 법학교육은 두개 단계(즉 前 단계는 학사과정교육, 後 단계는 석사과정교육)로 변경하는 안을 제기하였다.¹⁹⁾ 이러한 개혁구상은 현재 각 학교 및 교육부에서 신중하게 평가되고 있다.

IV. 결어

1990년대 이후 타이완의 법학교육은 이미 “일체 법률인”이라는 보수적인 교육 정책을 초월하여 활발하고 다원화된 발전추세를 띠고 있다. 개방 및 복선형 법학교육정책의 채택으로 법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폭으로 증가는 그의 가장 뚜렷

18) 董保城, 전계서, 385면.

19) 謝銘洋, 전계서, 390-392면.

한 효과이다. 현재 타이완에서 만약 법을 공부할 맘만 먹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미국 law school체제에서 유래된 것은 틀림없다. 시행하는 시일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부 사항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아직 법학교육의 방향을 혼들 수 없다. 향후 어떻게 교수의 내용과 질을 향상하여 글로벌화 및 국제화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